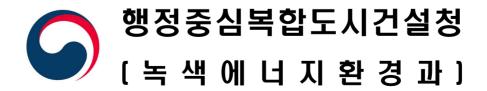
# 행복도시 신·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 개정

2019.11



### I. 총 칙

#### □ 목 적

○ 본 가이드라인(이하 "지침"이라 한다)은 「행정중심복합도시 저탄소 청정에너지도시 조성계획」("17년 7월)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 25% 이상 도입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 기준 등을 정하여 행복도시를 세계 최고의녹색도시로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□ 적용 범위

○ 행복도시 내 건설되는 모든 건축물 등에 대해 적용

#### □ 용어의 정의

- "신·재생에너지"라 함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(이하 "신재생에너지법"이라 한다)에서 규정하는 에너지(태양광, 지열, 연료전지, 풍력, 바이오 등)를 말한다.
- "신·재생에너지 도입비율"이라 함은 해당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에너지생산량 비율을 말한다.
- "예상 에너지사용량"이라 함은 "신재생에너지법"에 의해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열과 전력 수요의 합계를 말한다.

#### Ⅱ. 기본 방향

- 신·재생에너지의 에너지원별 도입은 기술성, 경제성,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되,
  - 도시 이미지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예술적, 창의적 및 친환경적 디자인 요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.
- ② 초기 투자 설비비용 및 회수기간 등을 감안,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의 확대 적용을 통한 신·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최소화를 유도한다.

#### Ⅲ. 설비의 성능 기준

- 건축주는 "신재생에너지법"제1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법령을 포함한 제반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  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
  - 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-300호)
  - 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(한국에너지공단 신·재생에너지센터공고 제2019-11호) 등

#### Ⅳ. 시설(용도)별 도입 기준

○ 2030년 총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시설(용도)별 신·재생에너지의 공급 기준은 다음과 같음

구 분	도입비율	구 분	도입비율	구 분	도입비율
단 독 주 탄	3.8	문 화 시 설	9.5	공 영 차 고 지	9.7
공 동 주 탄	2.5	의 료 시 설	2.7	농산물도매시장	4.1
상 업 업 두	2.0	체 육 시 설	27.0	운전면허시험장	4.1
유 통 시 설	! 16.5	기 업 연 수 시 설	2.4	종 교 시 설	4.1
첨단산업업두	1.4	노인휴양시설	8.6	주 유 소	4.9
공 공 기 관	<u>†</u> 18	청소년수련시설	8.4	복 합기 반시 설	9.5
교 육 시 설	12.2	농업기술센터	3.2	상하수도시설	7.0
복 지 시 설	. 6.5	환 승 터 미 널	5.1	폐기물집하장	3.8

- \* 단, 공공기관(국가, 지자체, 공기업, 정부출연기관, 정부출자법인)의 신축, 개축, 증축 등의 경우는, 공공기관 신재생공급의무비율에 따라 '17년(21%), '18년(24%), '19년(27%), '20년(30%)를 연도별로 순차 적용한다. (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제2항 관련)
- "신재생에너지법" 등 다른 법률에서 본 지침보다 신·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비율을 높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본 지침은 신·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, 보급 전망 및 행복도시 건설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 부서별로 단계별 시행계획을 별도 수립

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#### ♡. 행정 사항

- 건축주는 본 지침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도서에 반영하고, 건축 인·허가, 사업계획 승인, 사용승인검사 신청 시 [별표 1] 의 서식에 의한 "건축물 CO<sub>2</sub>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계획(실적)"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다음과 같은 경우, 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  -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사용목적이 일반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경우
  - 신·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 건축물의 고유기능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경우
- 신·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사유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을 첨부한 "신·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면제신청서" [별표 2] 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량, 설치 업체 등이 명시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명판의 규격은 [별표 3] 에 따른다.

#### Ⅵ. 신재생에너지 도입 비율 산정 방법

1. 신·재생에너지 도입 비율(%)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.

- (1) 신·재생에너지 도입 비율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량 중 그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·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다.
- (2) 신·재생에너지 생산량이란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, 신·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하여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을

보정한 값이다.

- (3) 예상 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 에너지의 양이다.
- 2. 예상 에너지사용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.

예상 에너지사용량 = 건축 연면적 × 단위 에너지사용량 × 지역계수

- (1) 연면적이란 "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"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. 단,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.
- (2) 단위 에너지사용량이란 용도별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에너지의 양이다.
- 단위 에너지사용량은 '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" 제48조를 준용한다. 단, 단독주택은 244kWh/m²·yr, 공동주택은 212kWh/m²·yr를 적용한다.
- (3) 지역계수란 지역별 기상조건을 고려한 계수이다.
- 3. 신·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.

신·재생에너지 생산량 = 원별 설치규모 × 단위 에너지생산량 × 원별 보정계수

- (1) 원별 설치규모란 설치계획을 수립한 신·재생에너지원의 규모를 말한다.
- (2) 단위 에너지생산량이란 신·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설치규모에서 연간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이다.
- (3) 원별 보정계수란 신·재생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이다.
- 4. 예상에너지 사용량 및 신·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신·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.

[별표 1]

# 건축물 CO<sub>2</sub> 감축 및 신·재생에너지 도입계획(실적)

건	눌	명								
위치(소재지)							용	도		
건축 연면적				m²	주차정	<b>망면</b> 적	(옥내	<u> </u>	m²	
	구 분		용 :	량 별		신 •	재생이 공급링		설치 (백민	
신ㆍ재 생	태	양광(kW)	( )Wp x (	Wp x ( )개 = kW				kWh/yr		
에 너 지 지열(kW)		(깊이) x (천공수) = ( )kW kV				kWh/yı	r			
도입현황	태	양열(m²)	(면적) x (갯=	<del>^</del> ) = ( )	m²			kWh/yı		
		기 타						kWh/yı		
	=	소계 (A)	kWh/yr, 백만원							
예상에너?	디 사용 (B)	량 (MWh/yr)								
신·재생어	너지 (A/B	도입비율(%) )								
	생에 날치겨	너지 추가  획								
	생	태면적률								
000 71 <del>-</del>	에너	지효율등급								
CO2 감축 관 련	녹색건축인증									
	에너	지성능지표								
	에너	지저장장치		kW	(출력)	)		kWh	(에너지 원	용량)
	EMS	S 설치여부								
		총 용량	총 조명용량							kW
에 너 지	도입	LED용량		LED 용량						kW
절감관련		총수량	총 조명 수량	-					개	%
		LED수량	총 조명 중			/	-11) (-		개	%
전력차단콘센트		전력차단콘센	트(개)/1	<u> </u>	센트(	개) = ( <sup>c</sup>	%)			
		기타			= -1					
위와 같이 신·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										
설계자 소속			직위			성명			(인)	
<u>감리자</u> 소속			직위			성명			(인)	
=11 = 1 = 1		건 축 주 			성	명				(인)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										
* 구비서류 1. 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개요, 산출내역서 1부 2. 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계통도 1부 3. 신·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위치가 명기된 도면 1부 4. 건축물의 개요, 조감도 1부										

### [별표 2]

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면제신청서							
건축주			작성자	성 등	명		
건축물 형 태				전화번			
		건축물 개요					
건물명		건축물 형 태			건축물 용 도		
건물 주소							
허 가 예정년월일	년 월 일 예정 년월일	년 월 '	일 (	준 공 예정 년월		년 월 일	
건축연면적 (신축,증축,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)	지상층 ( m²) 합계 ( 지하층 ( m²)	m²)	충수	<u> </u>		당 ( 증) 가 ( 증)	
면제신청 사 유	(필요 시 별지로 작성)						
위와 같이 신·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				
				년	월	일	
(건축주 ———	-)				(인)		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							
* 구비서류  1. 신·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면제 사유서. 1부. (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)  2. 전문가 검토의견서. 1부.							

1. '전문가'는 '에너지이용 합리화법'에 따른 '에너지진단전문기관' 또는 '에너지진단사' 및 '건축사법'에 따른 건축사임.

####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명판 설치기준

#### 1. 명판 도안

설비명		
설비명		
용량	"아래	l의 원별 표시사항 기재"
관리번호		
준공년월		
하자보증기간	년 월 (하자보증기	일 ~ 년 월 일( 년) 간 종료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)
	기업명: 대표전화: 홈페이지:	
설 치	업 체 대표자	성명: 직통전화: 휴대폰
전문기업	시공	성명: 직통전화:
	책임자	휴대폰
	A/S	성명: 직통전화:
	책임자	휴대폰

※ 본 설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신·재생에너지 도입 지침에 따라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, 양도 및 폐 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담당자에게 연 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

ㅇ규격 : 가로 12cm × 세로 16cm

○재질 : 비닥판-아크릴 (투명이크릴 합체)

0색상 :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

적용

○부착방법 :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지정된 장소에 전문기업이 자체 제작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

#### 2. 신ㆍ재생에너지원별 표시사항 및 표시위치

설비명	용 량	표시위치
태양광	설치용량(모듈용량 및 대수), 인버터용량 및 대수	인버터 전면
지열	설치용량(열펌프 유니트 용량 및 대수), 지중열교환기 사양	열펌프 전면
바이오	설치용량(혐기성소화조 용량 및 대수), 열원사용설비(발전기 또는 보일러 용량 및 대수)	소화조 전면
폐기물	설치용량(RDF 시설용량 및 대수), 열원사용설비(발전기 또는 보일러용량 및 대수)	RDF 성형기 전면
연료전지	설치용량(스텍용량 및 대수), 열원사용설비(발전기 용량 및 대수)	인버터 전면